

도시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신(新)주거복지 공간연구

- 농장형 주택(Farm Housing)시설 공간 중심으로 -

The Study on New Residential Welfare Space to Housing Stabilization for
Urban Low-income Group

- Focused on Spatial Consideration of Farm Housing Facilities-

박 병 규*
Park, Byong-Gyu

Abstract

Korea has been striv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in various aspects. It will also have to make an effort for its continued development in the future. The problems of low-income groups that occur in those processes cannot be simply ignored now. It is needed to provide an equal opportunity to low-income groups so that they can be part of the society. The cycle of economic problem should be disconnected through this process. Farm-Housing is one of the solutions to this problem. Its purposes are not only to provide residence in the complex, but to gain income through various activities, such a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and solve part of the economic problems of the people living in the Farm-Housing. To sell the products of Farm-Housing, the neighboring cities need to be designated as a hinterland. For this reason, Farm-Housing needs to be located in the suburban area of large cities. However, the current laws and policies make it difficult to construct Farm-Housing in suburban areas. Presenting plans to solve such problem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Key-words : Farm Housing, Transposition, Urban Low-income Group

1. 서론

1.1 연구의 내용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배려차원 정책이 많이 채택되어 실행되고 심지어는 복지가 정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소로까지 확대되어 왔으나 효율성과 지속성 측면에서의 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정의해보면 경제적으로는 소득계층구조 중 하위계층에 속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당면과제를 주거복지 관점에서 정리하면 주택구입능력 및 주거비 부담 과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상존, 임대주택 및 저렴주택 공급 부족,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

는 주거 취약계층 상존, 주거복지전달체계의 문제 등의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¹⁾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현재 11.3%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17.18%로 높아져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2022년에는 21.43%까지 고령인구 비율이 확대되어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²⁾ 이 같은 현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경제·사회적 영향을 미칠게 될 것이며,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사회의 인구구조모형을 변화시키게 되며, 생산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청년층이 부양해야 할 대상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 정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계획학박사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rchitecture
Tel. 02-970-6560, Fax.02-977-9202
E-mail: byonggyu@seoultech.ac.kr

1) 진정수김혜승강미나,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연구원, 2009, 인용 및 재편집
2) 통계청, 2012(2010년 통계조사자료)

있다.³⁾

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동 참여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축소시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과 의료비 등의 복지관련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 시킨다⁴⁾. 개인적으로는 노후생활을 위한 비용 마련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며, 소득수준의 저하와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자녀들의 부양의식 저하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과반수가 경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의 수급노인은 65세 이상 전체노인 구성 인구의 약 17%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급기준은 실제 최저 생계비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므로 빈곤 노인들의 소득 보장은 아주 미흡한 상태에 있다.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의 욕이 있는 저소득층과 고령화 인력에게 국가나 사회가 최소한의 고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농장형 주택(Farm Housing, 이하 FH로 함)은 주거와 생산을 할 수 있는 신개념의 시설이므로 이러한 시설의 제공은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이다. 따라서 FH시설은 사회의 기초단위가 되는 소규모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노동집약적 농장과 주거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운영 할 수 있도록 FH시설 구상을 제안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선행 연구와 관련된 법 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3) 이재운,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인용 및 재판집
 4) 이호용,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2010, pp.127-253
 5) 김은영,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일자리사업 교육만족도 및 교육욕구: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인용 및 재판집

파악하였으며, 각종문헌조사와 함께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인 NRF-2010-327-B00762에서 도출한 방향을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신(新)주거형태를 통해 저소득층 및 고령인구의 상호보완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3 용어의 정의

본 논문의 본문 전개에 앞서 용어의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

「농장형주택」 또는 「Farm-Housing」(이하 FH)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것이다.

FH는 두 가지 공간 개념이 포함된 새로운 주거의 형태이며, 농장부분과 주거부분이 같은 건물 내에 결합된 형태이다.



<Fig 1> FH Concept-1

FH는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공간을 제공하며, 작물의 재배를 통해 발생하는 결과물의 판매를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발생하는 수익금은 작물 생산에 참여하는 거주민에게 돌아가는 형태이다.⁶⁾



<Fig 2> FH Concept-2

6) 박병규, 농장형 주거 설계 기술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2.04

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 사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주택복지정책에 관한 논문은 다양하게 발표 되어 왔으나, 본 연구의 주제인 FH시설의 일부로 수직형 농장과 관련한 연구는 세계 일부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진행단계로 계획적인 측면에서 만 제시되어 있는 실정이며, 세부실행 방안 측면에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Table 1〉 Low-income housing welfare policy

No	Case study	Author/Research institution	Year
1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families, Incheon Research	Yunhwan Ki	2008
2	Housing Welfare Policy Implication and Urban Low-income Housing Tenure :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Changyeong Kim · Geonseop Jeong	2011
3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housing welfare policy	Jungman Ann	2011

〈Table 2〉 Vertical farm

No	Case study	Author/Research institution	Year
1	The Concept of the Vertical farm and Analysis	Jeongik Son	2009
2	Study of new architectural type program through vertical farm design for sustainable Seoul	Hyeongguk Kim	2010
3	A Study on Overseas Examples and Effects of Urban Farming Architecture	Huiseon Lim	2011

1) 선행 연구사례에 대한 결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도시농장의 새로운 건축 기법으로서 Vertical farm을 접목시킴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의 다양화를 통하여 FH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았다면 FH는 같은 시점에서 바라봄으로서 사회문제와 도시의 문제를 같이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 하려 한다.

2.1 저소득층의 정의

저소득층이란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계층의 하위 구조에 속하는 계층을 일컫는다. 빈곤에 대한 정의는 각국마다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 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정책적 측면에서는 1963년 공영주택법에서 주택가격과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공공주택에 입주가능 계층으로서 저소득층을 분류하였으며, 사회복지 정책적 측면에서는 과거 보건사회부가 지정한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었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자격기준이 저소득층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조작적 정의로서 기능하고 있다.(기윤환, 2008)

2.2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

저소득층에게 고용과 주거의 안정은 그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요인이다.⁷⁾ 빈곤으로 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거주할 수 없거나, 소득에 비해 주거비가 과다하여 생활고를 겪는 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것은 주거복지정책의 1차적 목표이다. 따라서 광의의 주거복지의 개념에는 단순히 주거 자체에 대한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주거지원 외에 일자리, 교육 등 주거와 연관된 여타 서비스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기윤환, 2008)

주거복지⁸⁾는 “개인 및 가족의 주거 기본욕구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주거복지연대)과 “주택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안전성을 확보해 주고,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자를 보호하는 등 국가를 위시한 공공

7) 이태진·현시용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8) 「주택법」 제3조, 제7조, 제76조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노인복지법」 제28조, 제31조, 제33조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등에서 주거복지, 지역사회복지, 노인주거복지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부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장세훈, 1999: 하성규, 2003: 기윤환, 2008)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수단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공적주거지원을 받는 저소득 계층이 주거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이 제고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여타의 이유로 인하여 공적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주택시장에는 주거의 공공성을 중요시 하는 형평성의 개념과 사적재화로서 시장기능을 중요시 하는 효율의 개념이 공존하며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역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세부적 목적은 크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도모와 시장실패 치유, 그리고 주거복지를 통한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복지정책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할 수 있음은 삶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다. 주거안정성은 삶의 질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주거비용 안정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초래되는 생계비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의욕이 상승하며, 계층 간 소득 격차와 사회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등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도 직·간접적 지원제도를 통해 개입하고 있는데 직접적 지원제도의 대표적 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간접적 지원제도의 대표적 예는 보조금 지원 등으로 주거비를 경감하여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정책을 살펴보면, 1982년부터 새로 공급된 총 주택 중 14.7%가 공공임대주택이었으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융자금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또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정 후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가구별인원수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⁹⁾

3. FH 제안

3.1 FH 목적

FH 목적의 협의적 개념은 소득층과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개념이며, 광의적 개념으로는 도시 내 쇠퇴지역의 재생 전략 개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공간개발과 공간간의 연계방안, 공간구성으로 인한 공동체 회복기술과 커뮤니티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개발기술 확보 등 미래지향적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원천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농업과 주거의 재결합을 통하여 미래형 신개념 주거 특성화 전략으로 토지의 이용률 증대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FH시설은 생산 및 소비, 생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위한 활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활동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 필요한 일자리는 1순위로 FH시설 입주민에게 제공되고, 2순위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이러한 활동의 혜택을 노동이 가능한 저소득층(노인층 포함)에게 최대한 부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FH시설에 입주하여 농장시설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수요자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령 홀로 사는 중증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입주민이 형편이 어렵다고 FH시설에 입주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주거겸용 시설을 배려하여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식사와 의료보조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¹⁰⁾ 따라서, FH시설은 노동력의 제공이 가능한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명확한 계층의 설정이 필요하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9) 김창영·정건섭, 도시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정책방향·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 14권 제1호, 2010.7, pp.305-316

10) 임재현·한상삼·정승영·최신용, 주택정책론, 법문사, 2008

가장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FH시설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얻어진 생산물의 판매를 통한 수익은 FH시설 유지비용을 일부 제외하고 노동에 참여한 입주민과 노동력 제공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입주민들은 이렇게 얻어진 수익을 통해 스스로 자활이 가능하게 되며, 입주민의 생활과는 다른 생활양식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2 FH시설 건설 유지 방안마련

3.2.1 FH 건설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
FH시설 건설은 단순히 수익창출만을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사회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자하는 것이다. 저렴한 거주비용과 수입원의 제공은 저소득층의 생활에 새로운 순환 고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장 가시적인 사업성만으로 FH시설의 건설을 판단한다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해결책은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제공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지원책을 FH시설에도 적용을 해준다거나, FH시설 건설시 다른 주택사업들 보다 세율을 낮춰준다거나 하는 등의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2.2 생산, 부속시설 및 주거영역의 합리적인 공간계획

도심근교지역에서 FH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극대화과 초기 투자비 절감 등을 위하여 고층의 FH시설 배치가 합리적일 것이다. 한정된 토지 내에서의 건물배치는 주거 공간, 커뮤니티 공간, 물류 공간 등의 구역으로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공간의 계획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물의 생산, 가공 등을 위한 작업공간과 이를 지원하는 사무실, 창고, 하역장 등의 생산, 부속시설의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FH시설 내(內) 작업공간의 경우 생산시설의 계

획이 가장 중요하다. 생산, 가공, 포장, 배송 전(前) 적재를 위한 창고, 상하차를 위한 하역장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핵심적인 기능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계획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FH시설 입주민들의 주거공간계획 역시 중요하다. 현재 주거형태와 개인주의적 성향의 문화로 인하여 닫혀있는 현관문을 커뮤니티의 재생을 위한 시설 배려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을 통합하고 노인인구와 거주민, 외부거주민들의 생산 참여 방안 마련을 통한 실질적 사회적 혼합을 기대해보며, 공동시설, 소규모 새참터, 타작마당 공간 개발을 통한 참여의식고취 및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로 안정된 삶의 영위를 유도하고 3세대의 융화를 통한 전통 가족 문화 재생이 필요할 것이다.

3.2.3 기능별 주요 구조부 차별화 설계

FH시설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공간이 연계되어 주거와 농업생산 기능을 수용해야 하며, 동시에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업성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하나의 건물이지만 두 기능별로 주요 구조부의 설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① 주거 및 Core 공간 : 기존의 고층 공동주거형태로 하고, Farm 공간과 연계된 부분은 열림과 차단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② Farm 공간 : 현재 연구되고 있는 식물의 성장 및 수확과 분류 등의 작업과 이동을 위한 수평·수직 동선 및 식물생장에 필요한 일조, 보온, 수분살포 조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설계되 기본적으로는 철골조 위주의 구조체가 유리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현재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유사한 개념으로 Vertical Farm은 작물재배, 어류양식, 닭사육장, 식품마켓과 레스토랑의 기능을 포함하는 농장과 주거, 사무, 관광, 상업센터가 혼합된 건물이다

③ 지구 생태 보존이라는 화두에 관련하여 공동주택 건축물에 식물농장을 접목하는 형태이므로 농장에서 생산되는 주간의 많은 산소와 주거공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계획 및 이를 상호 치환하여 산소는 야간에 주거공간으로 공급하고, 이산화탄

소는 주간에 식물농장으로 공급하여 식물의 탄소동화 작용과 주거공간에 산소가 풍부하도록 많은 공기를 환류 시킬 수 있는 통로 공간 등을 고려한 공간 구조를 설계하도록 한다.

3.2.4 신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 시스템

FH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저비용·저에너지 건축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FH시설의 에너지 사용량과 유지관리 부하를 낮추기 위하여 신생 에너지인 외파를 이용한 태양열, 외부 공간을 활용한 태양열 급탕과 풍력 발전기, 농장에서 발생하는 농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과 장기적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3.2.5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관련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이해관계 대립을 보이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주거문제는 지역성을 고려할 때 지역주택시장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며, 주거복지 현황파악과 지표설정, 프로그램 계획과 집행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자금지원제도 마련 등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¹¹⁾

3.2.6 운영체계 구축

FH시설 내에서 일어나게 될 작물의 생산, 재배, 가공, 배송 등의 작업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Vertical Farm 사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체계를 FH시설에서 농장부에 접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3.2.7 지원정책 및 지원수단 마련

FH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FH시설에 입주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임대주택 입주요건이 아닌, 일상생활 및 노동에 지장이 없는 사회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

는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건립을 위한 자금적인 부분을 경제성의 논리에 맞추어 접근하게 된다면 FH시설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분명하다. FH시설의 최종목표인 사회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면 FH시설 건립은 수월 할 것이다.

3.2.8 타 정책과의 연계

FH시설이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타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고용, 자활, 복지정책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주거 소외계층과 자활이 가능한 계층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시키면 주거복지가 실현되었다고 판단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3.3 향후 연구방안

FH시설은 주거와 축약된 공간에서의 농업기능을 연계하여 각 공간기능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상호 보완하는 동시에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되는 삶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 및 저소득층 모두에게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기회와 연령층별 능력에 맞춘 역할 분담 등을 통한 미래 사회의 이상형 공동주거를 제안 하고자 한다. 금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구공간과 기능의 설계에서 운영까지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이후 관련 기술 분야별 연구와 결과는 추가 사항으로 지속되어야 하겠다. 관련 기술 분야를 요약하면, 공동주거와 농장공간의 연계 및 주 사용부재, 건축물의 구조 안정과 경제성, 식물 생산을 위한 환경유지, Ubiquitous, 인력 배분 및 관리, 품질 제고 및 시장개척, 보관 및 배송 등과 같은 일반 분야별 복합화 문제가 있다. 추가로 건축 환경 분야의 일조, 통풍, 보온, 보습과 앞 절에서 언급한 두 공간기능 사이의 공기 축적 및 치환기술, 육종연구 등은 특수한 기술 분야에 접목으로 향

11) 홍인욱, 저소득층 주거복지현황과 과제, 한국도시연구소, 2006, 인용 및 재편집

후 연구의 지속적 결과에 따라 접근이 가능한 융·복합기술 분야가 되겠다.

4. 결론

이상으로 FH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주거와 농장의 결합을 통해 도시 건설 경쟁력제고와 새로운 신규산업 창출, IT를 활용한 생태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환경오염의 감소와 거주자의 질 향상, 토지의 이용 극대화, 노인층의 사회적 배제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커뮤니티 문제를 완화 시키며,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저소득층 및 고령화 인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으로 문제를 접근하려 한다.

하지만,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적, 비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야 만이 FH시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주거와 농장이 결합된 FH시설 건립을 통하여 주거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고, FH시설의 거주민 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 빈곤에 대한 순환 고리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가진 FH시설이 될 것이다.

감사의글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 NRF-2010-327-B00762

참고문헌

1. Seonghui Gang, A Study on Revitalizing Job Creation Policy for Elders in an Aging Society : In case of Gyeonggi Provinc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1.6
2. Changyeong Kim, Geonseop Jeong, Housing Welfare Policy Implication and Urban Low-income Housing Tenure :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Volume 14 No.1, 2010.7

3. Jungman Ann,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housing welfare policy, Sungkyu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doctoral dissertation, 2011.12

4. Yunhwan Ki,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families, Incheon Research,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2008

5. Cheolbeom Park,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in apartment type factory space componen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master's degree dissertation, 2007.2

(접수일자 : 2013년 04월 22일)

(심사완료일자 : 2013년 05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13년 05월 30일)